

신종플루 급여기준·질의응답(개정판)

2009. 11월 개정판



신종플루 대책지원단

목 차

I. 신종플루 질병관리본부 지침

II.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1. 행위 (검사, 감염관리, 격리실입원료 등)
2. 약제 (타미플루약제)
3. 청구방법 (약제 무상지원) 등

III. 관련 Q & A

붙임 : 유관기관 연락처

1. 신종플루 질병관리본부 지침

그간 질병관리본부 발표 및 홈페이지 게재자료 중 신종플루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자료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개정 6판(2009.10.26) 반영, 개정내용은 음영()으로 표시

1.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특성

가. 바이러스의 전파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함
- 계절인플루엔자는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됨
 - 예를 들어,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 비말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2m이내, 6 feet)로만 이동함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전파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구감염, 결막염 혹은 위장감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임

나. 잠복기

- 잠복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7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음

다. 임상증상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환자는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를 보였음
 - 미국에서 발생한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열(94%), 기침(92%), 그리고 인후통(66%)을 보였음

라. 합병증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예전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환자를 보면 가벼운 호흡기질환에서 하기도 증상, 탈수 혹은 폐렴, 급성호흡부전까지 증상을 보였으며 종종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

마. 전염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염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추정된 전염기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에 근거함
- 감염된 사람은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이 소멸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봄(보통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 어린이의 경우 특히 10일 이상 전염기를 가질 수 있음

2.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사례정의

1) 확진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Conventional RT-PCR
 - 바이러스 배양

2)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 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3) 의심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을 보이는 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3. 항바이러스제 투약

가. 항바이러스제 투약

1) 항바이러스제의 감수성

- 현재 유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Oseltamivir, Zanamivir에 감수성을 보임

2) 항바이러스제 처방기준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 가. 59개월 이하 소아
 - 나.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
 - 다. 65세 이상 노인
 -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3)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주의사항

- 관리의사 또는 주치의가 항바이러스제 복용법 및 부작용 설명
-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라이증후군 유발 가능)
- Oseltamivir과 Zanamivir에는 감수성이 있지만(susceptible) amantadine과 rimantadine에는 내성이 있음(resistant)
- 임신부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시 의료인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음
- 가급적 증상 발현 48시간 내에 투여
- 투약기간 중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을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투약을 중단할 수 있음

4) Oseltamivir (타미플루)

- 약제 형태 : Oseltamivir phosphate 75mg 경질캡슐제
- 투여 방법
 - 정상 성인 : **5일간 75mg 1일 2회 투여** (예방적 투약 시 10일간 1일 1회 투여)
- ※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토한 경우 1 capsule 더 투여 가능
- 신부전 환자 및 간기능 저하 환자 :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히 투여
- 소아 환자
 - i 13세 이상의 청소년
 - ii 치료목적 : 75mg을 1일 2회, 5일간 투여
 - ii 예방목적 : 75mg을 1일 1회, 10일간 투여
 - ii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타미플루 캡슐을 따서 해당용량만큼 시럽에 섞어서 먹임
 - ii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
 - i 1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아
 - ii 치료 및 예방 권장용량

체 중	치료 목적(5일간)	예방 목적(10일간)
15kg이하	30mg씩 1일 2회	30mg씩 1일 1회
15kg-23kg	45mg씩 1일 2회	45mg씩 1일 1회
23kg-40kg	60mg씩 1일 2회	60mg씩 1일 1회
40kg이상	75mg씩 1일 2회	75mg씩 1일 1회

- ii 어린이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

i 1세 미만 소아

ii 치료 및 예방 권장용량

개월수	치료 목적(5일간)	예방 목적(10일간)
3개월 미만	12mg씩 1일 2회	권고하지 않음 (단, 상황에 따라 투여가능)
3개월-5개월	20mg씩 1일 2회	20mg씩 1일 1회
6개월-11개월	25mg씩 1일 2회	25mg씩 1일 1회

ii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캡슐을 따서 해당용량만큼 시럽에 섞어서 먹임

※ 1세 미만의 치료 및 예방목적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발생에 의해 한시적으로 승인(j09.5.1 식품의약품안전청)

o 부작용

-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부작용은 구토, 구역 등으로 첫 복용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계속 복용하면 1~2일 내에 없어짐
- 위장관 부작용의 빈도는 음식과 함께 복용시 감소됨
- 심한 부작용발생시 약사를 통해 보건소에 신고

5) Zanamivir (리렌자)

o 약제 형태 : 디스크 할러를 통한 경구 흡입으로만 투여 가능

o 투여 방법

- 7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투여
- 1일 2회 매회 2번 씩(1일 용량 20mg) 5일간 투여(예방적 투여 시 1일 1회 매회 2번 투여)

o 주의사항 : 부작용으로 기관지연축(bronchospasm) 발생 가능하므로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다른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약제 우선 사용.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기관지 확장제 먼저 사용한 후 투여

※ 호흡기 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생체 이용률이 Oseltamivir보다 떨어짐

4. 예방백신 관련 안내 (정부 보도자료 내용 중 발췌)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언제 접종받을 수 있나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접종장소</th> <th>접종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 대응 요원 등 (80만명)</td> <td>소속기관</td> <td>10.27일부터</td> </tr> <tr> <td>▪초·중·고교 학생 (750만명)</td> <td>해당 보건소가 학교방문</td> <td>11월 중순</td> </tr> <tr> <td>▪생후6개월 ~취학전 아동, 임신부</td> <td rowspan="3">820만 명</td> <td>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병의원</td> <td>12월 중순</td> </tr> <tr> <td>▪65세이상 노인</td> <td>보건소</td> <td>2010년 1월</td> </tr> <tr> <td>▪만성질환자</td> <td>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병의원</td> <td>2010년 1월</td> </tr> <tr> <td>▪군인 (66만명)</td> <td>소속부대</td> <td>2010년 1월</td> </tr> <tr> <td>▪일반인 (3,200만명)</td> <td>백신 취급 모든 병의원</td> <td>2010년 1월</td> </tr> </tbody> </table>	구 분	접종장소	접종시기	▪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 대응 요원 등 (80만명)	소속기관	10.27일부터	▪초·중·고교 학생 (750만명)	해당 보건소가 학교방문	11월 중순	▪생후6개월 ~취학전 아동, 임신부	820만 명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병의원	12월 중순	▪65세이상 노인	보건소	2010년 1월	▪만성질환자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병의원	2010년 1월	▪군인 (66만명)	소속부대	2010년 1월	▪일반인 (3,200만명)	백신 취급 모든 병의원	2010년 1월
구 분	접종장소	접종시기																									
▪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 대응 요원 등 (80만명)	소속기관	10.27일부터																									
▪초·중·고교 학생 (750만명)	해당 보건소가 학교방문	11월 중순																									
▪생후6개월 ~취학전 아동, 임신부	820만 명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병의원	12월 중순																								
▪65세이상 노인		보건소	2010년 1월																								
▪만성질환자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병의원	2010년 1월																								
▪군인 (66만명)	소속부대	2010년 1월																									
▪일반인 (3,200만명)	백신 취급 모든 병의원	2010년 1월																									
2	타미플루와 예방백신의 차이점은?	<p>타미플루는 인체 내 침투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치료제이며, 예방백신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예방약임.</p> <p>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투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경우에는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임.</p>																									
3	타미플루만 먹으면 예방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지?	<p>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더라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항체가 생겨 예방접종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임.</p> <p>대부분 사람들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후 완치된 경우 항체가 생기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p>																									
4	예방백신을 접종하면 곧바로 면역력이 생기나?	<p>예방백신을 접종 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항체)이 생기기까지는 보통 10~14일이 걸리므로, 예방접종 후에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p> <p>(면역효과는 70~80%정도이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이보다 효과가 떨어짐)</p>																									
5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	<p>통상 불활성화 백신은 동시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공급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일부를 제외하고 불활성화 백신으로 알려져 있음.</p>																									

II.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 급여기준

- 행위 : 검사, 감염전문관리, 격리실 입원료 등
- 약제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셀) 등
- 청구방법 : 약제 무상지원 관련 등
- 기타

2009. 10.30일 현재 시점이며 이 후 기준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종플루 관련 우리원 홈페이지 게시자료 목록

(2009. 11. 2 현재)

연번	제목	제공일자	제공부서	게시위치 (요양기관서비스)
1	(보험급여과-2018호, 2009.05.28)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안내	i09.5.28	수가등재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096
2	신종플루 확진검사 반영 의과 수가과일 (2009.6.1 기준)	i09.6.1	수가등재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103
3	(보험급여과-3139호, 2009. 8.17)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i09.8.18	급여기준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1
4	신종플루 확진검사 반영 의과 수가과일 (2009.8.18 기준)	i09.8.18	수가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2
5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i09.8.19	심사전산개발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6
6	(보험급여과-3185호, 2009. 8.20)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관련 세부 질의응답	i09.8.20	급여기준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8
7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관 명단	i09.8.20	급여기준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9
8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 타미플루캡셀 등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등	i09.8.21	급여기준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0
9	신종인플루엔자A(H1N1)관련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명단 안내	i09.8.21	급여기준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4
10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무상지원 국가비축분(타미플루 등) 제품코드 별도 부여안내	i09.8.24	약제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5

연번	제목	제공일자	제공부서	게시위치 (요양기관서비스)
11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109.8.25	심사전산개발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7
12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관리료 특례적용 관련 행정해석 안내	109.8.26	수가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8
13	감염관리료 특례 반영 의과 수가파일 (2009.8.26 기준)	109.8.26	수가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9
14	신종플루 급여기준·질의응답 안내	109.9.1	수가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28
15	요양병원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행정해석 안내	109.9.17	수가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51
16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한 의약품 청구방법 안내	109.10.8	심사전산개발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80
17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등 안내	109.10.23	의료급여기준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97
18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109.10.23 109.10.30	심사전산개발부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96, 1302
19	신종플루 급여기준·질의응답 안내 (개정판)	109.11.3	수가등재부	-알림마당/공지사항

1. 행 위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39호 (2009. 8.18부터)

□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1) 적용수가

구 분	준용 수가	비 고
○ Real-time RT-PCR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1,608.27점) (수가코드 C6095006)	09.5.28부터 급여적용
○ Conventional RT-PCR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기타 (5 7 8 . 7 2 점)(C5968006)	09.8.18부터 급여적용
○ Multiplex RT-PCR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1,608.27점) (C6096006)	09.8.18부터 급여적용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2) 대상환자 (적응증)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①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상기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3) 적용기간 :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시적용

4) 행정해석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80호(기09. 8.20)

연번	질의	회신
1	다른 검사(나-469 바이러스항원 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이 가능한지	보험급여과-3139호(기09.8.17)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에 대한 Real 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를 확진 검사로 인정
2	확진검사법의 적용수가 (C6095, C5968, C6096) 산정시 전문의 판독 가산 적용 여부	나596 및 나597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로, 현행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전문의 판독가산 산정 가능함 (산정코드 006 기재)
3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중 대상환자 적용증에 모두 해당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세가지 적용증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4	확진검사법 대상환자 적용증 중 기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지침」의 기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5	확진검사법 중 multiplex RT-PCR와 Real time RT-PCR 등을 모두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확진 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6	기Multiplex RT-PCR 중 신종인플루엔자A(H1N1) 포함한기의 의미는?	수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번에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Multiplex RT-PCR방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되어 있음.(노598

연번	질의	회신
		<p>기타검사-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p> <p>다만, 신종 인플루엔자A(H1N1)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호흡기바이러스를 multiplex RT-PCR로 검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종류 불문하고 나597-자 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임.</p>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494호(09. 9.15) : 요양병원 산정 관련

- 요양병원에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연번	질의	회신
1	요양병원 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적용방법	<p>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행위별로 별도 산정 가능</p> <p>○ 적용기간 : 경계 및 심각단계에 한시 적용</p> <p>※ 대상환자(적응증), 검사종류, 적용수가 등은 동일 적용</p>
2	요양병원 내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약제 원외처방 가능여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만 원외처방할 수 있음

※ 확진검사 관련 참고자료

구분	Real-time RT-PCR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	Conventional RT-PCR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Multiplex RT-PCR (다중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방법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 증폭된 유전자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증폭된 유전자의 양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유전자가 증폭되면 바로 컴퓨터로 검사결과가 전달됨.	한 시험관에서 유전자 하나만을 증폭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RNA를 DNA로 변환시켜 변환된 DNA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합 효소연쇄반응에 들어가는 것임.	증폭된 유전자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디자인하면 시험관 한 개안에서 유전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증폭한 후, 증폭된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 유전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 신속한 치료와 감염관리 효과 기대 및 원인 바이러스 확인으로 불필요한 항균제 남용 방지
소요시간	6시간	8시간	7~8시간
검사수가	92,690원	33,360원	92,690원

※ 확진검사 수가 종별 본인부담금 비교

1) Real Time RT-PCR

(단위 : 원)

검사 실시기관	수가 (종별가산적용)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검사 의뢰시	112,160	진료받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의원	117,250	23,450	35,170
병원	122,350	24,470	48,940
종합병원	127,450	25,490	63,720
종합전문요양기관	132,550	26,510	79,530

2) Conventional RT-PCR

(단위 : 원)

검사 실시기관	수가 (종별가산적용)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검사 의뢰시	40,360	진료받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의원	42,190	8,430	12,650
병원	44,030	8,800	17,610
종합병원	45,860	9,170	22,930
종합전문요양기관	47,700	9,540	28,620

3) Multiplex RT-PCR

(단위 : 원)

검사 실시기관	수가 (종별가산적용)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검사 의뢰시	112,160	진료받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의원	117,250	23,450	35,170
병원	122,350	24,470	48,940
종합병원	127,450	25,490	63,720
종합전문요양기관	132,550	26,510	79,530

나. 거점병원, 감염전문관리로, 특례 적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226호(2009. 8.25)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함

구 분	세부내용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료)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 의 소정점수로 산정
적용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적용시점 및 기간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 기타 행정해석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80호(09. 8.20)

연번	질의	응답
1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급성전염성질환인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
2	신종인플루엔자의 질병코드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함

2. 약 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약제 급여기준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7호 (적용일 : 2009. 10.29부터)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캡셀)**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중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약성중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 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4754호(09.9.3)**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적극 협조 요청;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

타미플루 캡셀 등 제품코드 부여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 (적용일 : 2009.8.21부터)**

연번	분류	성분코드	제품코드 (기등재)	제품코드_1 (국가비축분 무상품목)	제품명	업소명	규격	단위	상한 금액	비고
1	629	358901ACH	oseltamivir phosphate(as oseltamivir) 75mg							
2	629	358901ACH	E01840561	E01840560	타미플루캡셀 75mg	한국로슈	1	캡슐	3,197	전문
3	629	358902ACH	oseltamivir phosphate(as oseltamivir) 45mg							
4	629	358902ACH	E01840951	E01840950	타미플루캡셀 45mg	한국로슈	1	캡슐	2,403	전문
5	629	358903ACH	oseltamivir phosphate(as oseltamivir) 30mg							
6	629	358903ACH	E01840941	E01840940	타미플루캡셀 30mg	한국로슈	1	캡슐	1,922	전문
7	629	250001CSI	zanamivir 100mg							
8	629	250001CSI	E00890661	E00890660	리렌자로타디스크 5mg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20	포낭 /통	28,447	전문

3. 청구 방법

가.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개정)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 ; 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2009.8.24)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플루엔자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2568호(2009.10.28)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급증에 따른 약국대상 항바이러스제 배포계획 알림;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연번	제품코드 1 (기등재 품목)	제품코드 2 (무상지원 품목)	제품명	업소명
1	E0184056 <u>1</u>	E0184056<u>0</u>	타미플루캡셀75mg	한국로슈
2	E0184095 <u>1</u>	E0184095<u>0</u>	타미플루캡셀45mg	한국로슈
3	E0184094 <u>1</u>	E0184094<u>0</u>	타미플루캡셀30mg	한국로슈
4	E0089066 <u>1</u>	E0089066<u>0</u>	리렌자로타디스크5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 **청구방법**

1.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 기재방법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998	100/100 진료(조제)내역 (*)	X/X(9)/9(5)V9 (2)/9(3)/X(200)	코드구분/코드/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준용명

2.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 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 (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
 - 특정내역 : 100/100본인부담 처방시 기고시된 청구방법대로 기재

3.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 시행일 : 2009.10.30 처방조제분부터

4. 전국 모든 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처방조제 (100/100 본인부담)한 경우

- 기 고시된 100/100 본인부담약제 청구방법대로 청구

□ 국가비축 타미플루캡셀75mg을 소분하여 처방조제한 경우 기재방법

예시	의료기관 처방 ^{주1)}	약국조제 ^{주2)}			
		실제조제내역	청구내역		
			처방내역	조제내역	특정내역 MT998
1	타미플루캡셀30mg (E01840940) 1;2;5	타미플루캡셀75mg (E01840560) 0.4;2 j5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동일하게 기재	조제료 5일분 산정	3/E01840560/ 0000080/005/
2	타미플루캡셀45mg (E01840950) 1;2;5	타미플루캡셀75mg (E01840560) 0.6;2 j5		조제료 5일분 산정	3/E01840560/ 0000120/005/
3	타미플루캡셀30mg (E01840940) 2;2;5	타미플루캡셀75mg (E01840560) 0.8;2 j5		조제료 5일분 산정	3/E01840560/ 0000160/005/

주1)

2) 거점병원 처방조제시에도 동일

[예시]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타미플루캡셀 30mg을 1회 30mg씩 1일 2회 5일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코드	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E01840940	타미플루캡셀30mg	1	2	5

- 조제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항	목	조제 구분	코드 구분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2	01		1	Z1000	약국관리료	600	1	1	1	600
02	01		1	Z2000	조제기본료	540	1	1	1	540
02	01		1	Z3000	복약지도료	650	1	1	1	650
02	01		1	Z4105	내복약조제료(5일 분)	2,350	1	1	1	2,350
02	01		1	Z5050	의약품관리료(5일분)	750	1	1	1	7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998		3/E01840560/0000080/005/				

- 실제 조제내역 -

코드	약품명	1 투약량	1 !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E01840560	타미플루캡셀75mg	0.4	2	5

나.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적용 안내 (신설)

(: 2009. 10. 1)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6호(2009.10.1)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4304호(2009.10.7) ;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청구방법**

- ▶ **적용약제** :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와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한 의약품(5일분 이내)
- ▶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 「57」 기재
 -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57」 :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

□ **작성예시**

[예시]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캡셀 75mg 7일분과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목적으로 타이레놀정 3일분을 함께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출	항	목	코드 구분	코 드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0002	01	03	1	AL507	180	1	1	1	180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7일분)					
0004	03	01	3	A4380049	33	1	3	3	297
				타이레놀정					
0005	03	01	1	1	2,490	1	1	1	2,490
				J50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998		3/E01840560/0000100/007/			
2			0004	JS002		57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구분코드
 57 :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임을 표기하는 예외구분코드

4. 기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신설)

(: 2009. 10.22)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6호, 2009. 10.22)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 2009. 10.22)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관련 Q&A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5551, 2009.10.23)

□ 주요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1항 제6호 신설
 -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의료급여 절차 예외사항 추가

2.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 고시

- 1)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 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2차의료급여 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 2009. 10. 22일 진료분부터
- 유효기간 : 2010. 3. 31일 까지

□ **청구방법**

구 분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
<u>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가 아닌 수급권자</u> 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에 바로 내원한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감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 한 건임을 기재	본인부담면제자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u>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M003~M008) 기재</u>
<u>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수급권자</u> 가 <u>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에 바로 내원한 경우</u>	상 동	<u>본인부담구분코드 “B099” 기재</u> (공단에서 진료확인번호 전송받을 시에도 “B099” 코드 사용)

※ B099: 전염병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의료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현행과 동일**

□ **관련 Q&A**

연번	질의	회신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u>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거점병원(2·3차기관)에 바로 내원하였으나</u>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산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 목에 따라 <u>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u>
2	거점병원(2·3차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되어 진료받은 후 <u>다른 상병에 대한</u> 진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한지?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정하여진 바, <u>신종인플루엔자 합병증 등이 아닌 다른 상병의 진료에 대하여는</u>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 따라 <u>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야 함.</u>

연번	질의	회신
3	의료급여 혈액투석(외래) 및 정신 질환 <u>정액수가 산정하는 환자</u> 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산정 여부?	<u>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및 약제는 정액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u> 다만,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한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u>별도 행위별로 산정 가능하며,</u>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u>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u> 경우에 한하여 원외처방할 수 있음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신설)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5901호 (j09.11. 2)

- 주요 내용
-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j치료거점병원j의 j별도의 진료공간j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별도로 안내해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 1) j별도의 진료공간j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 2) 다만, 응급실에 j별도의 진료공간j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 가능
 - 3) j응급환자j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
 - j별도의 진료공간j을 응급실 밖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
(→ 환자본인부담의 의미로 확인)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 (신설)

(적용일 : 2009. 10. 1부터)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6호(2009.10.1 개정)

□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따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

제3조(직접 조제가능 의약품 지정)

①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 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 한함.)에 공급하여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2.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②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의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III. 관련 Q & A

I. 행위

[1] 검사

[2] 감염전문관리료

[3] 격리실입원료 등

II. 약제

[1] 처방

[2] 청구방법

III. 기타

↳ 2009.11. 1일 현재, 급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평가원 문의 내용을 취합발췌한 자료로 향후 기준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I . 행위

[1] 검사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고위험군 환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확진검사는 급여대상인지?	고위험군 환자대상이라 하더라도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진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2	확진검사 3종 모두 실시시 인정 가능한가?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3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어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급여대상 여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4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동 검사의 추가적용 항목은?	현재 ;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비급여항목임.
5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나요?	바이러스 항원(현장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종인플루엔자 감별목적으로 동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치료 및 격리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먼저 시행하기 바람.

[2] 감염전문관리료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AH400)는 확진환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거나 확진되어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2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진료과목(전문분야)가 별도로 있는지?	진료과목(전문분야) 불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입원환자에게 산정함.
3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AH300)와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중복산정 가능함.
4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는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산정할수 있는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에만 산정함.

[3] 격리실입원료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전에도 격리실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함.
2	신종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격리조치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판단된 경우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하되,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함.
3	결핵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조치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현행 격리실입원료 산정지침에서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결핵병원에서 전염력이 강한 결핵환자를 격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 조치하였다면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II . 약제 (항바이러스제)

[1] 처방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거점병원에서 동일환자에게 타미플루캡셀과 타 약제를 동시에 처방한 경우 모두 원내조제가 가능한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타미플루와 동시에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음.
2	동시에 타미플루캡셀은 원내조제하고, 타 약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조제료는 산정가능한가?	현행 인정기준 (고시 제2003-65호, 03.11.13)에 의거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내조제약제에 대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인정되지 않음.
3	거점병원에서만 타미플루캡셀 처방이 가능한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가능하고, 약제무상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점병원에 한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하여 모든 약국 에서 조제토록 하고 있음.
4	타미플루캡셀 인정기준에 의거 환자 전액본인부담시 그 외의 진료내역은 산정가능한가?	그 외 진찰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산정가능함.
5	거점병원이라도 무상공급 약제가 전부 소진되면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원외처방 가능함.
6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내원시 확진검사로 반드시 감염을 확인하고 타미플루캡셀을 처방하여야 하는지?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없이도 바로 타미플루캡셀을 처방할 수 있음

[2] 청구방법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며, 거점병원 및 <u>전국 모든 약국</u> 에서 조제가능함
2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를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3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기등재코드를 기재함
4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 란에 원내투약일수 기재함
5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6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상병명 기재방법	J09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함
7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상병명 기재방법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j111(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 로 기재하거나,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진단코드(R00~R99)를 기재하며, 그 외 호흡기질환 관련 상병코드를 기재할 수도 있음
8	요양기관에서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특정내역 MT998 기재여부	기재안함

II . 기타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타미플루약제 인정기준 등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건강보험 가입자도 요양급여의 절차가 예외 적용되는지?	현행 요양급여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3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시 응급의료관리료가 급여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증상이 ;응급증상 또는 응급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신종플루 문의 · 상담처 안내

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1588-3790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02-705-6933,6934 02-705-6265~7 02-705-6484~5 02-705-9817, 19 02-705-6489, 90	고객센터 신종플루 대책지원단 행위(수가등재부) 행위(급여기준부) 약제(약제기준부) 청구방법(심사전산개발부)